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상황의
중앙응급의료센터 통보 및 공개 〉

■ 이수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54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상황의 중앙응급의료센터 통보 및 공개	2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25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7. 3.
- (3) 회 부 일 : 2025. 7.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상황의 중앙응급의료센터 통보 및 공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u>
<u>1의2.</u> (생략)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내용인 ① 응급의료기관의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 통보 및 ② 해당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현 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① 현재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일환인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주기적으로(1일 24회 이상) 전송하고 있으며,

해당 전송정보에는 응급실·중환자실 가용병상, 가용수술실 수 및 주요 기기 보유·운영 여부와 같이 수용능력과 관계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 응급의료기관이 이와 같은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17조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응급의료기관의 병상 및 병원자원 정보 신뢰성 관련 지표’²⁾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송하는 것이 평가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임.

※ 동 평가지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전송하는 정보 항목: [참고]

②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송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정보를 통합 응급의료정보 종합상황관³⁾ 및 응급실 찾기 서비스⁴⁾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현 제도 하에서도 일부 충족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이 이와 같은 정보를 평가와 연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송하는 것이 의무적 사항은 아님.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평가지표 중 ‘공공성’ 평가영역-‘자원정보 신뢰도’ 지표

3) <https://portal.nemc.or.kr/>

4) <https://www.e-gen.or.kr/> -응급실-응급실 찾기-상세보기

또한, 정보의 전송이 미흡하였을 때는 평가에 반영되어 보조금·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받거나(동법 제17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5), 평가 결과가 미흡할 때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이 있을 수 있으나(동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6),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가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개되는 응급의료기관 정보의 충실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동법 제4조제1항7))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응급실 현장 상황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용 병상·수술실의 수와 같은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내에 잔여 가용 병상·수술실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수용 가능여부는 의료인력의 가용상태나 기존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미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때의 과태료 부과가 응급실 현장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음.

-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제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제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현장의 수용능력은 매우 유동적이며 급변하는 응급의료환경에 따라 실시간 통보가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음.

- 부정확한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점검 및 정보관리 행위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보다 적합

□ (대한병원협회)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보호자에게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함. 그러나 통보되는 정보와 실제 현장 간에 괴리성, 통보시점과 환자 도착 시점간 현장 상황의 변동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이미 응급의료기관 평가상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응급의료수가의 차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반대함.

□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기관 정보의 통보 의무를 신설하며 위반 시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는 접근은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 충분한 전담인력, 정보제공 관련 과실에 대한 합리적 면책 및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먼저 제도화되어야 하므로 신중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

(종로구·서대문구) 응급의료기관의 정보는 시간대별로 변화가 심하며 수용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수용 불

가능하거나 해당 의료진이 응급수술·처치 중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있어, 실시간 여유병상이나 인력자원 정보가 응급실 혼잡도나 수용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음.

(서대문구) 현황 보고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 대한 명확하고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납득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며, 유관학회(응급의학회·소아응급의학회)와의 논의가 필요함.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응급의료정보의 다수에 대한 개방은 비응급환자의 방문 증가 등 과밀한 응급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들 정보는 실제 세부적인 응급환자 수용 여부 판단에는 미비한 정보여서 실효성이 적고 응급의료현장에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병상 및 병원자원 정보 항목
-------------	--

구분	항목	전송기준
응급실 기본정보 (6항목)	1. 응급실 병상	응급실 가용 일반 병상 수
	2. 응급실 소아병상	응급실의 가용 소아 전용 병상 수
	3.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응급실 음압격리 가용 병상 수
	4. 응급실 일반격리병상	응급실의 가용 일반격리 병상 수
	5. 소아 음압격리병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음압격리 가용 병상 수
	6. 소아 일반격리병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일반격리 가용 병상 수
중환자실 기본정보 (16항목)	1. 응급전용 중환자실	응급전용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2. 응급전용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의 음압격리 가용 병상 수
	3. 응급전용 중환자실 일반격리병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의 일반격리 가용 병상 수
	4. 내과 중환자실	내과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5. 외과 중환자실	외과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6.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7. 소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8. 소아 응급전용 중환자실	소아응급전용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9. 신경과 중환자실	신경과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10. 신경외과 중환자실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11. 화상 중환자실	화상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12. 외상 중환자실	외상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13. 심장내과 중환자실	심장내과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14. 흉부외과 중환자실	흉부외과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15. 일반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의 가용 병상 수
	16.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 가용병상 수
병원기반 자원정보 (2항목)	17. 소아 응급전용 입원 병상	소아 응급전용 입원 가용 병상 수
	18. 외상전용 입원실	외상전용 입원실 가용 병상 수
병원기반 자원정보 (20항목)	1. 입원실	병원 내 전체 입원실의 가용 병상 수
	2. 응급전용 입원실	응급전용 입원실의 가용 병상 수
	3. 응급전용 입원실 음압격리병상	응급전용 입원실의 음압격리 가용 병상 수
	4. 응급전용 입원실 일반격리병상	응급전용 입원실의 일반격리 가용 병상 수
	5. 수술실	병원 내 전체 수술실의 가용 수술실 수
	6. 외상전용 수술실	외상전용 수술실의 가용 수술실 수
	7. 정신과 폐쇄 병상	원내 정신과 폐쇄병동의 가용 병상 수
	8. 음압격리병상	원내 음압격리 병상의 가용 병상 수
	9. 분만실	실제 분만이 가능한 분만실 병상
	10. CT	CT 운영 여부
	11. MRI	MRI 운영 여부
	12. 혈관촬영기	혈관촬영기 운영 여부
	13.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운영 여부
	14. 인공호흡기(조산아)	조산아 치료에 필요한 인공호흡기 운영여부
	15.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운영 여부
	16. CRRT	지속적 신대체요법 운영 여부
	17. ECMO	ECMO 운영 여부
	18. 중심체온조절유도기	심정지환자 등의 치료적 중심체온조절유도기 보유 여부
	19. 화상전용 처치실	화상전용 처치실 운영 여부
	20. 고압산소치료기	고압산소 치료기 운영 여부

주: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공공성 영역-자원정보 신뢰도 지표-세부 전송기준” 중 발체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
 2024. 6.